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민원과장)
제출 연월일	2021. . .

법무통계담당 심사필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2021. .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반영 사항
- 나. 조례 내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수정

3. 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 나.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1. 10. 5. ~ 10. 24. / 의견 없음
- 다. 예산관련 사항 : 해당 없음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마. 규제영향분석 : 해당 없음
- 바. 그 밖에 참고사항 :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령군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별표 15의2제9호”를 “별표 15의2제10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5의2제9호”를 “별표 15의2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시설 :”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고령군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u>별표 15의2제9호</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u>별표 15의2제9호</u>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p> <p>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p>	<p style="text-align: center;"><u>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별표 15의2제10호</u>----- ----- -----.</p> <p>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 -----<u>별표 15의2제10호</u>----- ----- ----- ----- -----.</p> <p>1. -----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 ----- ----- -----</p>

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
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
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
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고령군수가 음식판
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
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
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
는 장소인 경우 : 그 규칙으로

----- 경우: -----

나. -----

-- 경우: -----

2. -----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

----- 시설: -----

3. -----

----- 경우: -----

정하는 서류

< 소관 부서명 >

민원과	
연락처	054-950-6692